

자 치 법 규

[조 례]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4년 5월 1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(인)

● 자치법규

[조 례]

제1768호 :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2

제1769호 :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

● 고 시

제2024-27호 :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정정 고시 7

●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68호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
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⑧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,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,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

제20조제9호~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「혈액관리법」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

10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(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, 연 1회로 한정한다)에 참석할 때

11. 「검역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원외출장,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http://www.junggu.seoul.kr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		



12.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

1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 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

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 0일)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·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·개정이유

- 조직의 능력 향상 및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저연차 공무원 및 장기 근속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를 개정하고, 상위법에 맞게 공가 및 특별휴가 항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공가 및 특별휴가 항목 개정 및 신설(제20조)
- 장기재직 휴가 일수 개정(제21조)
 -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5일 휴가 신설
 -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30일의 휴가 부여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4년 5월 1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(인)

●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69호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의정자료수집·연구비는 월 90만원”을 “의정자료수집·연구비는 월 120만원”으로 하고, “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”을 “보조활동비는 월 3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.

제·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·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변경되어,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의정활동비 지급금액 변경(제2조)
 - 기존 월 110만원(의정자료수집·연구비 90만원, 보조활동비 20만원)에서 월 150만원(의정자료수집·연구비 120만원, 보조활동비 30만원)으로 변경
- 의정활동비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(부칙 제2조)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-27호

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정정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311호(2017.8.24.)로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되었다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8-85호(2018.8.2.)로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지정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9-84호(2019.7.4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된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에 대하여 내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 고시합니다.

2024년 5월 10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봉래구역 정비구역의 지정 (변경없음)

가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정비구역 명 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증 감	변 경	
기정	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중구 봉래동1가 48-3 일원	30,725.0	-	30,725.0	

2. 봉래구역 정비계획(변경)

가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
나. 용도지역 · 지구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
다.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라. 정비기반시설 설치(부담) 계획 (변경없음)

마. 건축시설계획(변경)

결정 구분	구 역 구 분		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		위 치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비고
	명 칭	면 적(㎡)	명칭	면 적(㎡)						
기정	봉래구역	3,377.2	제1지구	2,804.2	봉래동1가 57-2 일원	업무 시설	60이하 (저층부 70이하)	1,012 이하	90이하	-
제1지구 심의완화 사항	기정	• 용적률 : 1,012%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: 600% ② 허용용적률 : 200%								
		목적	인센티브 완화 요건						산정방식	완화량
		친환경 개발	녹색건축물 인증 (그린 1등급)						정량부여	100%
			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(240kWh/㎡·y이하)							
			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(11%이상)							
		도시경제활성화	벤처기업집적시설(934.75㎡이상) 설치						정률부여	50%
		보행가로활성화	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						정량부여	50%
		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최우수 등급시								
		③ 상한용적률 : 1,012%								
		구분	인센티브 산식		적용내용		완화량			
	공공시설(도로) 기부채납	허용용적률 × (1+1.3×α)		800 × (1+1.3×(573.0/2,804.2))		1,012.5%				
	계				-		1,012.0%			
	변경	• 용적률 : 1,012%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: 600% ② 허용용적률 : 200%								
		목적	인센티브 완화 요건						산정방식	완화량
		친환경 개발	녹색건축물 인증 (그린 1등급)						정량부여	100%
			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(240kWh/㎡·y이하)							
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(11%이상)										
도시경제활성화		벤처기업집적시설(934.75㎡이상) 설치						정률부여	50%	
보행가로활성화		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						정량부여	50%	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우수 등급시										
③ 상한용적률 : 1,012%										
구분		인센티브 산식		적용내용		완화량				
공공시설(도로) 기부채납	허용용적률 × (1+1.3×α)		800 × (1+1.3×(573.0/2,804.2))		1,012.5%					
계				-		1,012.0%				

※ 기 결정고시(서울 중구 고시 제2018-85호, 제2019-84호)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급 오기 정정(최우수 → 우수)

3.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: 생략

4. 열람장소 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중구 도산장비과(☎02-3396-5775)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